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

1. 귀 기관의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·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### <주요 조치 사항>

구분(방역수칙 등)	주요 내용(현행 유지)
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	▲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
모임행사 제한	▲ (사적모임) 전국 7인 이상 금지 ▲ (사적모임 외) 지역축제 등 일부 행사 외 300인 초과 금지
사적모임	
사적모임 외 모임행사	
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시설	▲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11종) * 유흥시설 등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장/카지노(내국인), 식당카페, 멀티방, PC방,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, 파티룸, 마사지업소·안마소
구분(대상시설)	주요 내용(세부 조정 사항)
학원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	▲(공통) -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㎡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* *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→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주(2.7.~2.25.)적용  -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▲(관악기·노래·연기 교습) -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좌석, 개별 가위식 사용 전 후 환기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</li> <li>▲(기숙형 학원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접종완료자의 예방거리 예외 등 삭제</li> <li>-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</li> </ul> </li> </ul>
<b>상점 · 마트 · 백화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(공통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호객행위 금지(합성 등 포함된 판촉행위)</li> <li>-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, 매장 내 취식금지</li> </ul> </li> <li>▲(대규모점포 및 3,000㎡이상 농수산물 유통센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점검 (3회 이상, 점검대장 작성)</li> </ul> </li> </ul>

가. 적용 기간: 2022. 2. 7.(월) ~ 2022. 2. 20.(일) 24시

나. 적용 지역 : 전국 17개 시·도\*

\*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경과규정

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: 2022.2.21.(월) 05시까지 적용

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(연령) 확대\*: 2022.3.1.(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\* 계도기간: 2022.3.1.(화) ~ 2022.3.31.(목)

\* 적용기간,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③ 학원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: 2022.2.7.(월)~2022.2.25.(금)

### ①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

#### ○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11종)

-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민)
- 식당·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 PC방, 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, 파티룸, 마사지업소·안마소

#### ○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19종) 및 종교시설

-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오락실, (실외)스포츠경기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이·미용업, 국제회의, 학술행사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학원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,

영화관·공연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도서관, 상점·마트·백화점, 종교시설

○ 고위험장 사업장(2종) : 콜센터, 물류센터

○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조치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**붙임1: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**

## ② 모임·행사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### ■(사적모임)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
\* 식당·카페 이용 시 '접종완료자 등'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(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)

### ■(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) \*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

- (1~49명)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·행사 가능

- (50~2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

- (300명이상)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(지역)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·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

→ 단, **2021.12.16. 0시 이전** 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,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(가급적 취소 연기, 축소하여 개최 또는 취소 권고)

※ 접종완료자 등: 접종완료자, 완치자, PCR음성확인서 소지자, 18세 이하인 자 (2022.3.1.부터는 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(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)

※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

### <모임·행사 예시>

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※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

■ (시험)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
\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### ③ 교통시설

- 대상 시설 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- 법적 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-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  -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0199(2021.6.28.)에 의한 '전국 대중 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' 계속 적용

### ④ 국공립시설

- 소관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- ※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(이용)특성, 방역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, 국공립시설(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) 탄력적 운영가능

### ⑤ 사회복지시설

-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### ⑥ 사업장

- 유연근무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 적극 활용,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,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

### ⑦ 학교(등교)

-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·과밀학교 밀집도 2/3\*으로 조정하되,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·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
  - \* 초등학교(1,2학년 포함) 밀집도 5/6, 중·고등학교 밀집도 2/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.20(월)부터 적용(학교별 탄력 적용), 유·특수·돌봄 및 소규모·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

3.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(붙임)를 **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이메일,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** 주시기 바랍니다.
4.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  
2.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문서관리카드 산업일자리혁신과-134 5-4  
3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.    끝.

##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

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중앙회, 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업종별 협·단체

주무관 유재훈 과장 전결 2022. 2. 7.  
김재준

협조자

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-136 (2022. 2. 7.)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산업일자리혁신과 / <http://www.moti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4222 팩스번호 044-203-4722 / [jaehun9110@oma.go.kr](mailto:jaehun9110@oma.go.kr) 문서관리카드 산업일자리혁신과-134 5-5 / 대국민 공개